

7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편집국장)

農水産部

種鷄需給정책전환

농수산부는 78년도 종계수급계획은 발표하고 금년도 종계 도입계획을 GPS로 산란계 6,000수 육용계 12,000수 PS로 산란계 및 육용계 각 8만수 합계 16만수를 도입키로 결정 하였다.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지난 6월호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그간 양계업계의 최대 관심사 이었던 종계도입 문제가 77년도 PS도입에 이어 78년도 GPS도입을 어용 하므로써 앞으로 업계의 판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에도 외국계 도입품종의 선택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 예는 여러번 있었다. 이번 G.P.S의 도입결정은 이런 의미에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최대의 지명도가 높은 외국계 대리점 쟁탈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과



열상태로 까지 이르게 하였다.

종계가 60년대말 제한 승인품목으로 된 후에도 우리나라 종계수요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여 왔었다.

지금까지 년도별 종계도입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년도	P		S		GPS		PL	
	산란계	육용계	산란계	육용계	산란계	육용계	산란계	육용계
1963~66	25,039	15,640						
67	47,180	28,522						
68	141,468	61,945						
69	94,390	124,053				2,000		
70	197,140	200,515	1,000	2,000				
71	168,828	291,144	4,095	11,950				
72	61,907	135,890	4,160	10,750				
73	58,356	134,295	5,926	20,195				
74		74,020		6,250				
75		29,280		3,000				
76							1,139	858
77	100,000	50,000						
78	80,000	80,000	6,000	12,000				
합	971,728	1,225,304	21,181	68,145	1,139			858

종계도입 금지에서 재개되기 까지의 일지.

1973. 12. 4.....국내 우량종계 개발로 다음과 같이 조치.

가) 산란계
이후 종계및 종란(GP.S. P. S)의 도입을 중지한다.

나) 육용계
74년에 종계(P. S) 114,000수 이내의 수수에 한하여 도입한다(축산1162-3001)

1976. 2. 14.....국산계 개발보급및 능력

향상을 위한 협의회 개최(농수산부 회의실)
참석자→축산국장 축산과장 축산시험장 국립종축장 대한양계협회 한협가금육종, 대학, 안양및순진종축장
국산계개발 보급을 위해 순계(P. L)도입을 허용키로 의견통일

1976. 3. 12.....76. 2. 14 협의회개최 결과에 따라 76년도에순계2,000수 이내에서 수입허용키로 결정

1977. 10. 10.....업계건의에 따라 산란용P. S 10만수 육용P. S 5만수를 도입키로 결정

1978. 6. 1.....GPS도 도입키로 결정
P. S는 산란 육용 각 8만수 GPS는산란 6천 육용 12,000수를 도입키로 결정.

위의 종계도입 현황표에서 보듯이 1963년이후 외국에서 종계가 도입되지 않은 해는 한번도 없었고, 특히 이번 78년도 종계도입은 과거와는 달리 전체종계수요량중 국산종계로 대체하고 부족분만을 도입한다는 방침에서,앞으로 수급종계정개을 일반 양계업자를 위한 우수종계 보급이란 관점에서 다루기로 한점이다.

이제 종계의 물량이 부족해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산계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우수종계를 일반 양축가에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종계도입을 하는 이상 쿼터량을 책정하여 쿼터배정이 사업의 확장으로 연결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여러가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다.

또한 국립종축장에서도 GPS를 도입하여 국내 민간업자와 함께 종계 보급체제

를 2원화 하는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실시 되어져야 할것이며, GPS 공급계약상의 문제로 당초 중계를 도입키로한 목적과 달리 우수 품종의 GPS가 도입되는 길을 막는일은 없어야 되겠다.

다.

병아리는 외형이 대부분 동일하며 (유색이 일부 있음) 생물이므로 수수의 변동이 항상 있고 외관상 식별이 불가능 한 것을 현재는 세관에서 현지출장 확인 하는등 문제점이 있었다.

관세청

검사생략품목 확대키로

지난 17일 관세청은 수입자유화 시책에 발맞춰 사후평가제를 조기 실시키로 하고 이를 전담할 전담기구를 해 3/4분기중 본청에 설치하는 한편 검사생략품목도 점차적으로 늘려 수입물품의 적기확보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업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 되고 있는 병아리의 경우 현행 사전평가제에 의해 통관되고 있어 수입신고서를 접수 시킨후 세관직원이 농장에 현지출장하여 현품의 검사, 평가 과정을 거쳐 세관에 따라 과세 표준 채택의 불균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면장을 발급해 주고 있어 신속한 통관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종계수입업자의 경비가 필요이상으로 과중하게 부담 되어왔다. 본회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움과 병아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입되는 병아리에 대하여 검사생략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그간 관세청에 건의한 바도 있다.

병아리도 검사생략 품목으로 결정될 경우 병아리수입 절차가 간편하여지며 동물검역소의 검역을 마친후 세관원의 현지확인 없이도 서류접수로 통관이 가능하여 진



다행이 이번 관세청에서 현재 양곡등 1백 10개 품목에 국한된 검사생략품목을 확대키위해 현재 대상품목을 선정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77년도

상장법인 100사

광고비 5백 30억 원

우리나라 상장기업 327개중 12월말 결산법인 286개를 대상으로 연간 광고선전 활동비 절대액으로 100개 업체를 선정한 결

표1. 국내기업들의 광고비 지출액

()안은 76년, (○)은 작년누락 (單位:천원)

순위		기업명	업종	광고선전비	매출액	광고선전비대 매출액비율
77	76					
1	(1)	태평양화학	가장품	3,830,796	43,406,083	8.3
2	(0)	해태제과	식품	2,397,273	61,580,772	3.9
3	(2)	대한항공	운송	2,249,857	182,162,231	1.2
4	(0)	한국화장품	화장품	2,203,927	17,175,779	12.4
5	(8)	롯데제과	식품	2,070,104	40,463,893	5.1
6	(3)	금성사	전자	1,900,532	103,528,049	1.8
7	(5)	동아제약	의약	1,816,246	28,041,726	6.5
8	(7)	제일제당	식품	1,696,851	78,901,069	2.2

과 식품, 주류, 음료, 제약 화장품업계가 59개사로 광고비는 총광고비 5백29억 9천만원중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매출액 대비 광고비의 지출비율은 76년 평균 1.5%에서 77년 1.4%로 0.1%가 상승하였으며 업종별로 보면 식품 2.8% 주류 음료 3.1% 화장품 세제 유지가 8.5% 의약품 7.3% 이었다. 그런데 이들 100대기업의 77년도 광고비 5백 29억 9천만원을 우리나라 총광고비 추정액 1천억원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이들의 총 매출액은 3조 7천 3백 6십억으로 우리나라 GNP 15조 2천 4백억원의 24.5%를 차지하는 것이다. 기업이 매출액의 1.4%를 광고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광고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를 알수 있으며 우리와 가까운 제분협회등에서도 밀가루 소비확대를 위한 선전비가 수억원씩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양계업계의 대 소비자 계몽이 너무도 미약함을 알수 있다. 우리는 계란 값 닭고기 값이 하락할때 마다 우리 스스로 생산조절을 하는 소극적인 방법 밖에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것조차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었다. 계란과 닭고기는 많은 잠재 수요를 가지고 있어 소비 선전에 따라서는 우리업계가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 같은 축산물인 우유가 소비

선전으로 소비량이 급신장 하고 있는 것등은 좋은 예이다. 계란 및 닭고기의 총외형



액을 2천억원으로 볼때 이의 1%인 20억원만 양계산물 소비선전을 위하여 사용될 때 양계업계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참고로 국내기업들의 광고비 지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공포

축산물가공처리법 1961.1.20
법률제1011호
개정 1974.12.16 법률제2738호 26
개정 1977.12.31 법률제3060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獸畜의 도살과 축산물의 가공처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물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獸畜”이라 함은 소·말·양·돼지·닭·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수육, 乳, 수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난가공품을 말한다.
3. “수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수축의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
4. “乳”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우유와 양유의 원유, 가공유 및 탈지유를 말한다.
5. “수육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햄, 쏘세지, 베이컨, 건조저장육, 肉漬物, 냉동육 기타 수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연유, 탈지연유, 환원우유, 분

유, 탈지분유, 버터, 치즈, 발효유와 기타 乳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卵加工品”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란을 처리 가공한 것을 말한다.
9. “도수상”이라 함은 식용에 공할 목적으로 수축을 노살 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
9. “유처리장”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를 여과, 소분, 탈지 또는 살균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
10. “축산물가공장”이라 함은 수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난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
11. “착유장”이라 함은 목장에서 착유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하며 “집유장”이라 함은 집유의 저장을 목적으로 냉장 여과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
12. “검사원”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를 말하며 “자체검사원”이라 함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의 경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수의사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 2 조의 2 (적용의 제한) ① 제 2 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중 닭·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축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 1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지정 지역내의 유통과 수급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지역외에도 제 4조의 작업장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 3 조 (작업장) ① 수축의 도살·해체유 의 처리 수육·유 및 난의 가공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유택리장 점유장 또는 수산물가공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축을 도살·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수축을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2. 학술연구용에 공할 때
3. 원양항로를 항해하는 선박내에서 선원·선객의 식용에 공하고자 할 때
4. 농수산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돼지와 양을 자가소비에 공하고자 할 때

② 제 1항제 1호·제 2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축을 도살해체한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해체한 수축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에 공할 수 있다.

제 4 조 (작업장의 설치허가) ① 작업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설치허가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작업장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검사) 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작업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 6 조 (작업장의 양도등) ① 작업장을 상속받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의 경영자는 작업장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축산물의 가공처리방법등) 수축의 도살·해체 유의 처리 및 위생등급과 축산물의 가공방법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수수료) 수축의 도살·해체 또는 유택리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시설이용의 거부금지) 도축장 또는 유택리장의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살 해체 또는 유택리의 청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수축의 검사)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하는 수축과 착유하는 유우 또는양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 2조의 2 제 1항 단서 및 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 또는 검사원의 수시검사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학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득을 목적으로 수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작업장에서 처리 가공한 축산물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서, 처리 가공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자체검사와 검사원의 수시검사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합격표시등) ① 검사원 및 자체 검사원은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축산물과 포장에 합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가공장의 경영자는 축산물가공품의 용기에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불량품의 판매금지) ① 식육판매업자 식육운반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과 변질한 축산물(이하 “불량품”이라 한다)를 저장, 운반, 판매, 진열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식육판매업자 식육운반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의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14조 2 (불량용기 등의 사용금지) ① 농수산부장관은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용기·포장과 그 원자료, 첨가물, 검인용, 기구 및 색소등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의 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농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작업장에서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격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수급조절) 농수산부장관은 공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축산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육과 원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보고등) ①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또는 착유장의 경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검사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착유장에 출입하여 장부 기타 서류 및 작업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불량품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식육판매업소 식육운반업소 또는 음식점영업소에 출입하여 불량품의 저장·운반 판매 진열 또는 사용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불량품의 폐기처분)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불량품에 대하여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폐기압수 또는 수거하게 하거나 불량품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작업장 설치허가의 취소등) ① 도지사는 작업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작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품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작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작업장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당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 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품목 추가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품목의 제조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
6. 2년간 계속하여 작업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품목 제조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도지사는 작업장에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작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이나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포상금) 제 3조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수축을 도살·해체한 자 또는 제11조 규정에 위반하여 수축에 학대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불량품을 주무관

청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0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작업장 또는 착유장의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수축의 도살·해체·유의 처리, 축산물의 가공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를 교시하거나 방조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축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를 교시하거나 방조한 자
3. 제 4조제 1항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4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2조(同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5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 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축의 도살·해체·유의 처리 또는 축산물의 가공행위를 한 자
3. 제15조 또는 제1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3조(同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 2항 또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 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
3. 제 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4. 제 16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5.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이 그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내지 제23조의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 74. 12. 26법2738호 }
진 문 개 상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작업장의 경영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이 설치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 77. 12. 31법3060호 }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작업장의 설치허가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작업장의 설치허가나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집유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유장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물가공 처리법 시행령

1975. 2.28. 대통령령 제7562호)
 개정 1978. 1. 9. 대통령령 제8924

제 1 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축과축산물의 범위) (1) 법 제 2조 제 1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1.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및 꿩
- 2. 토끼
- 3. 기타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2) 법 제 2조 제 5 호에서 “기타 수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수육의 통조림 및 병조림
- 2.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분쇄육, 캣트미트

(3) 법 제 2조 제 6 호에서 “기타 유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가공연유
- 2. 제조분유
- 3. 유장분말
- 4. 버터유
- 5.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가공품

제 3 조(적용의 제한) 법 제 2조의 2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축”

이라 함은 거위, 칠면조, 토끼, 사양하는 꿩, 닭, 꿩 기타 농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 4 조(검사원의 임명등) (1) 법 제 2 조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수의사 수의사자격이 있는 수의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공수의중에서 이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받은 검사원은 근무청의장 또는 위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축산물 검사 업무에 종사한다.

(3) 검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과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조의 2 (자체검사원의 자격등) (1) 법 제 2 조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수의사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2년이상 당해 축산물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2. 농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일정한 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자체검사원의 승인 절차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 5 조(포상금의 지급) (1)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1. 법 제3 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곳에서 수축을 도살해체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당해 수축의 시가 표준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축에 학대 행위를 한자를 신고한 자에

게는 당해 수축의 시가표준액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량 축산물을 저장, 운반, 판매, 진열 또는 사용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농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시행규칙) 이 영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부령 제 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

규칙개정령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

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유가공품의 범위)

생략.

제 3 조(검사원의 업무등)

생략.

제 4 조(자체검사원 교육)

생략.

제 5 조(자체검사원의 승인절차) ① 영 제

4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2. 이력서
- 3.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이 발행한 신원증명서
- 4. 작업장의 검사시설명세서

②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 6 조(검사기록부의 비치등)

생략.

제 7 조(자체검사원을 지정할 작업장) 다

음 각호의 작업장의 경영자는 법제 2 조 제 12 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유택리장
- 2. 집유장
- 1. 축산물가공장
- 4. 일반도계장

제 8 조(자가소비를 위한 도살)

생략.

제 9 조(신고)

생략.

제 10 조(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한 수육의 처리)

법제 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한 수육을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에 의하여 절박도살한 수축중 동물병원을 개설중인 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고, 도축장내에서 해체한 것으로서 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경우
- 2. 법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에 공한 수축으로서 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경우

제 11 조(작업장의 설치허가등의 신청)

법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와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당해작업장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허가증의 교부)

생략.

제 13 조(허가증의 게시)

생략.

제 14 조(허가증의 재교부신청)

생략.

제 15 조(허가사항의 변경)

생략.

제16조(수수료) 제11조·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장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작업장중 도축장은 특별도축장·일반도축장·간이도축장·일반도계장·간이도계장 및 도토장으로 구분한다.

④ 간이도축장 및 간이도계장은 허가기간을 3년 이하로 한다.

⑤ 간이도계장은 법 제2조의 제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외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간이도축장은 시·군 및 읍소재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전용으로 간이도축장을부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작업장의 시설검사등)

생략.

제19조(준공검사)

생략.

제20조(상속·양도등의 신고)

생략.

제21조(휴지·재개·폐지의 신고)

생략.

제22조(축산물 가공방법등)

생략.

제23조(작업장 사용수수료) ① 작업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축의 도살·해체 수수료를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특별도축장에 있어서는 도살하고자

하는 수축의 평균시가의 100분의 2이내(작업장 사용료, 내장처리비 및 육류냉각비를 포함하되, 냉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각비는 수수료에서 제외한다.)

2. 일반도축장 및 간이도축장에 있어서는 도살하고자 하는 수축의 평균시가의 100분의 1.5이내(작업장사용료 및 내장처리비를 포함한다.)

3. 도계장 및 도토장에 있어서는 도살하고자 하는 수축의 평균시가의 100분의 2 이내

② 작업장의 경영자는 도살·해체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징수할 수 없으며 또는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검사기준등) ① 법 제10조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축산물의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농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검사기준과 시험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된 수축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의하여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착유우·양의 검사)

생략.

제26조(착유장의 시설)

생략.

제27조(검사신청등)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해체하는 수축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축을 일정기간 도축장안의 계류사에 계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육·유가공

품 및 수육가공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도축을 하는 날 또는 가공을 개시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국립동물검역소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실시)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검사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간이도계장의 도계검사는 검사원이 월 4회이상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은 월 1회이상 자체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작업장 및 축산물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사원이 도축검사를 할 경우에는 당해 도축장의 도체현수 시설능력을 초과하여 도축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검사원이 시험실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가축보전소(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검사수수료) ① 제2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는 자는 국립동물 검역소장이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검사시료)

생략.

제31조(검사증명서등)

생략.

제32조(검사사항통지)

생략

제33조(도살의 금지) 검사원은 생체검사결과 수육이 나온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도살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2. 가축전염병에 이환되었거나 이환된

것으로 의심이 될 때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학대행위를 당 하였거나 중독증상등 인체에 위해하거나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4조(집유의 금지)

생략.

제35조(합격표시등)

생략.

제36조(합격품 보관)

생략.

제37조(불량용기등의 사용금지)

생략.

제38조(사용정지명령등)

생략.

제39조(허가증의 반환)

생략.

제40조 (보고등) 생략.

제41조(작업장경영자의 준수사항)

생략.

제42조(포상금의 지급신청) 영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범법행위가 기소된 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체검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 7조에 규정된 작업장의 경영자는 1979년 4월 30일까지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하되, 이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기간중에 한하여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③ (허가증의 갱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

를 받은 자는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이규칙에 의한 작업장 설치허가증과 품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수수료는 면제된다.

④ (용기의 표시사항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인쇄된 용기의 표시 및 합격표시등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4월간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생략

(별표 2) 작업장의 시설기준

1. 일반도축장

생략

2. 특별도축장

생략

3. 간이도축장

생략

4. 일반도계장

가. 일반도계장에는 계류사·생체검사실·격리실·작업실·검사실·소독실·오물처리장 및 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류사에는 가금등을 적당하게 계류 또는 수용할 수 있게 구획되어야 하며 바닥은 석류·콘크리트·벽돌 등 불침투성 재료로 시공하고 급수시설과 적당한 배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생체검사실은 검사에 필요한 보정시설 및 조명등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시공하고 청소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다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스텐레스철재 또는 동등한 성질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작업실에는 도살방혈소·탕지소·탈우소·잔모처리소·내장적출소·냉각처리소로 구획하여 일관작업의 조작성이 적용하게 설비하여야 한다.

- (3) 작업장은 작업량에 적응한 넓이와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 축조되어야 한다.

- (4) 바닥은 콘크리트·석류 등 내구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5) 내벽은 내구성 재료로 하여 바닥에서 1.5m까지는 타이루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사면을 축조하여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6) 천정은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여 낙진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7) 채광 또는 조명이 충분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8) 창에는 철망 기타 방충방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9)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냉수 또는 필요에 따라 온수가 나오는 위생적인 수세설비 및 기계·기구류의 세척 또는 소독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10) 작업실 출입문은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으로 설비하여야 한다.

- (11) 도살방혈소는 일정한 구획내에서 콤베어링식 또는 방혈졸압식으로 설비하고 외과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 (12) 탕지소는 콤베어식 연속탕지조 또는 자동탕지식자동탕지기를 설비하여야 한다.

- (13) 탈우소는 콤베어식·이동식 탈우기 또는 자동탈모법 자동식 탈모기를 설비하여야 한다.

- (14) 잔모처리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15) 내장적출소는 콤베어식 내장운반기 또는 작업대를 설비하여야 하며 작업대에는 충분한 급수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16) 냉각소는 냉풍냉각장치 또는 수냉장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 (17) 내장처리소에는 내장처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검사실에는 검사에 필요한 기구와 검사대를 비치하고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바. 소독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기계와 기구를 비치하고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축조하여야 한다.
- 사. 작업장과 기타의 건물간의 통로는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아. 변소는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고 종업원수에 따라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방충, 방서시설을 하여야 한다.
- 자. 하수구는 암거로 하여야 한다.
- 차. 작업장 진입로 및 주차장에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 카. 작업장 주위는 외부에서 작업실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불침투성재료로 적당한 높이로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타. 오물처리장은 작업실에서 적당한 거리에 불침투성재료로 축조하고 뚜껑을 하여야 하며 혈액 및 오수의 정화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5. 간이도계장

- 가. 작업장은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 축조되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작업장의 넓이를 정할 수 있다.
- 나. 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사용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다. 내벽은 바닥에서 1.5m이상 타일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축조하고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 라. 계류시설(케이지)은 철재 또는 불침투성 재료로 설비하여야 하며 작업대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작업에 필요한 도살방혈통·탕지통·탈모기·오물처리통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 바. 수도시설 및 배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사. 도계육을 저장판매할 경우 냉장시설(쇼케이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아. 작업장 환기시설 및 방충·방서시설이 있어야 하며 종업원의 수세설비 및 갱의실이 있어야 한다.
- 자. 제조기계·기구류의 세척시설 및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 차. 변소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중변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도장

생략

7. 집유장, 유처리장 및 축산물 가공장

가. 공통기준

생략

나. 작업장별 시설기준

(1) 유처리장 집유장 및 유가공장

생략

(2) 수육가공장

생략

(3) 난 가공장

(가) 난 가공장은 준비실·검사실·시험실·제조실·냉장고·(냉동고)·포장실 및 보관실 등이 있어야 한다.

(나) 제조실에는 점란기·세란기·파란장치, 각반기, 정제기, 냉각기, 수란

조, 살균기, 제당기, 건조분무기, 열처리기등 제조에 필요한 기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혼연관등 가공장은 준비실 검사실, 제조실, 혼연실, 포장실, 보관실등이 있어야 한다.

[별표 3]

수축의 도살·해체 방법.

1. 소, 돼지, 양

생략

2. 가금 및 토끼

생산품을 조제·처리·가공·저장하는 작업과정은 완전히 청결하고 위생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가. 가금의 처리는 도살, 열탕, 탈모, 박피, 해체, 수세, 냉장 및 포장등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가공품은 냉장 및 냉각후에 가열등을 거쳐 포장한다.

나. 도살은 충분한 방혈을 거쳐야 하며 도체식용부위에 상처나 울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탕지는 완전히 죽은 후에 하여야 하고 과열등을 피하여야 하며 열탕은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라. 탈모는 외모 및 자모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토끼는 박피를 하여야 한다.

마. 해체는 냉장등에 의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냉장 및 냉동은 해체되어 식용부로 분리된 부분을 신속히 빙수에 냉각하여 5℃내지 6℃로 강하시킨다.

(1) 즉시 가공하지 않는 것은 도체내부 온도가 5℃이하로 급강하 시켜야 한다.

포장된 형태로 공장에서 운반될 가금은 온도를 5℃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포장된 형태로서 24시간 저장할 가금은 내부온도를 2℃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빙수냉각

(가) 음료수에 적합한 물로 제조된 얼음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제빙기가 없는 도제장에서 는 수냉각 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나) 해체된 가금은 다음에 규정된 기간내에 5℃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포장시까지의 이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도 체 중 량	시 간
1. 8kg 이하	4
1. 8kg 초과 3. 6kg 미만	6
3. 6kg 이상	8

(다) 계속 재가공을 위하여는 5℃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각탱크에 24시간 보존할 수 있다.

① 보존기간 중에는 5℃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얼음의 보충이나 기타의 조작을 하여야 한다.

② 24시간 냉각탱크에 보존될 가금은 5℃이하의 온도로 가금을 유지할 수 있는 냉각장안에 두어야 한다.

③ 세척·냉각제수는 포장시의 습기 흡수율 및 수분함유율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습기흡수도 및 수분함유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량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판매용으로 포장·냉동 또는 냉

동포장 될 가금의 세척·냉각 제수로 인한 최대허용습기흡수량 및 수분함유량은 포장시에 다음에 정한 백분율을 넘지 못한다.

가금처리품의 종류 및 중량세척 후 증가된 중량의 백분율

계 류 2.2kg 8% 이하 생략

해설

1974년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 76년 산닭유통을 도계유통으로 바꾸는 닭고기유통의 혁명을,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성남시등 7대 도시에서 실시하려 하였으나 소비자의 도계품에 대한 인식부족 도계장및 유통구조의 시설능력부족, 지금까지 유통을 담당했던 상인의 비협조등 여러 원인으로 실패하고 76년 8월 3일 소위 8.3사태를 만드는 불행으로 그해 12월 15일 국회 농수산위원회 결의에 따라 서울지역에 한해 법시행을 유보시키기로 결의 하므로써 원점으로 되돌아 가고말았다. 정부는 그간 위생적인 도계유통으로 전환 해야하는 대명제 앞에 76년의 실패를 거울삼아 법과 시행규칙을 보완 개정하여 다시 도계 유통으로 육계 유통의 개혁을 시도하게 된것이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본협회에서 광범위 하게 조사한것을 축산물유통 전문가이신 건국대학 윤희직박사가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로 나와있어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1. 검사원은 도계장에서 자체검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法 2 조 1 의12) 도계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2. 적용지역외에도 도계장을 설치할 수 있

어(법제 2 조의 2 의 2) 과거에 적용지역이 아닌곳에 도계장 설치가 불가능 하여 사실상 서울 시내에는 일부 국한된 공업지역외에는 도계장을 설치할수 없어 도계장의 신증축이 어려웠던 점을 해결 하였고.

3. 대부분 도계하는 시간이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검사원의 출근시간까지 기다려야 하고 검사시간의 지연 등으로 유통에 불편이 많았던것을 자체검사 또는 검사원의 수시 검사로서 대체할수 있게 되므로써(法제10조 및 12 조) 검사로 인한 마찰을 최소한으로 하였다.

4. 도계장의 시설기준도 일반도계장과 간이도계장으로 구분하여 농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간이도계장을 시설할수 있으며(시행규칙제17조 4 및 5 항) 도계장에는 냉동시설등을 의무화 하지 않는등 시설기준도 대폭완화하여 현재시장내의 생계점포도 약간의 개수로 간이도계장이 될수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에는 건축법및 서울시의 환경위생 및 공해정책과의 마찰은 예상되나 이에 대한것도 현재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이도계장은 유효기간을 3년이내로 함)

이상 법및 시행규칙을 완화하여 도계유통으로 유도하려는 이번 농수산부 조치는 그 의도는 환영하나 이법 시행의 성패는 소비자의 도계품에 대한 계몽과 닭고기 유통에 대한 별도의 보완조치가 없어 지금까지 유통을 담당하던 상인의 협조를 얻지 못할경우 76년의 혼란이 재연 되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항상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도 변함없을 것이다. 시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우리 모두의 숙원인 도계유통이 정착되기를 바란다.